

#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9-75
----------	------

제출년월일 : 2022. 11.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10.19.공포)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담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담례품 및 담례품 공급업체 선정 운영 사항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 지정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고향사랑기금 설치 · 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24조까지)

## 제정조례안 : 붙임1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2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붙임3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22. 10. 4. ~ 2022. 10. 14. (1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방침결정문 : 붙임4

## < 불임 1 >

#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관련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상품 · 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담당 실 ·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답례품의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소집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

을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시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안산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7. 그 밖의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④ 기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안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업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 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팀장
-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

본법」 제13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 나.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 다. 그 밖의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 · 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 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

## 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20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담당자 중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 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1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 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다른 담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 3.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 4. 제23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 ·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해 연도의 경우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 · 관리 할 수 있다.

**제3조(기부금 모집 · 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소관 실·과		자치행정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자치행정과장 윤 충 오
	담당·팀장 직위·성명	자치행정팀장 김 민 정
	담당자 성명·전화	정 은 주 (행정 3445)

#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9-75호
----------	--------

제안년월일 : 2022. 12. 1.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 수정이유

- 답례품 선정 위원회 및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의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용어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답례품 선정위원회 및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대상에 지역 농어업인(단체) 추가(안 제2조 및 제14조)
- 시 지역사랑 상품권을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산화폐로 수정(안 제3조제3항)
- 고향사랑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추천에 있어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 (안 제4조제2항)

#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항제4호 중 “생산” 을 “농어업인 단체 등 생산” 으로 한다.

안 제3조제3항제12호 중 “시 지역사랑 상품권” 을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산화폐” 로 한다.

안 제14조제3항제2호나목 중 “지방의회” 를 “안산시의회” 로 하고 같은 호에 라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농어업인(또는 농어업인 단체) 등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정안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생 략)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1. ~ 3. (생 략) 4. 지역의 <u>생산</u>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 6. (생 략) ③ ~ ⑤ (생 략)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원안과 같음) ② ----- ----- ----- ----- ----- ----- 1. ~ 3. (원안과 같음) 4. ----- <u>농어업인 단체 등 생산</u> ----- ----- 5. · 6. (원안과 같음) ③ ~ ⑤ (원안과 같음)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 ② (생 략)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 11. (생 략) 12. <u>시 지역사랑 상품권</u> , 관광 입장권 등 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생 략)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 ----- ----- ----- 1. ~ 11. (원안과 같음) 12. <u>「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산화폐</u> ----- ----- 13. (현행과 같음)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

원 안	수정안
<p>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1. (생략)</p> <p>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생략)</p> <p>나. <u>지방의회</u>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p> <p>다. (생략)</p> <p><u>〈신설〉</u></p>	<p>----- -----.</p> <p>1. (원안과 같음)</p> <p>2. ----- -----</p> <p>가. (원안과 같음)</p> <p>나. <u>안산시의회</u> ----- --</p> <p>다. (원안과 같음)</p> <p>라. <u>농어업인(또는 농어업인 단체)등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u></p>